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질병관리청에 개인정보 유출·침해, 정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침해 위험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3명(5급 1명, 6급 1명, 8급 1명) 중 2명(5급 1명, 6급 1명)은 증원하고 1명(8급 1명)은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인 국립검역소의 정원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이체하여 배정하고, 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명(6급 1명, 7급 1명) 중 1명(6급 1명)은 증원하고 1명(7급 1명)은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인 국립검역소의 정원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이체하여 배정하는 내용으로 「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가 개정(대통령령 제00000호, 2026. 8. 00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행정안전부 및 기획예산처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 0. 0. ~ 0. 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별표 5 중 총계 “477”을 “482”로, 일반직 계 “476”을 “481”로, 행정사무관 · 사회복지사무관 · 보건사무관 · 의료기술사무관 · 약무사무관 · 간호사무관 · 전산사무관 · 통계사무관 · 공업사무관 · 시설사무관 · 방재안전사무관 · 보건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“57”을 “58”로, 행정주사 · 사회복지주사 · 보건주사 · 약무주사 · 간호주사 · 전산주사 · 통계주사 · 공업주사 · 시설주사 · 방재안전주사 · 보건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“56”을 “58”로, 행정주사보 · 사회복지주사보 · 보건주사보 · 약무주사보 · 간호주사보 · 전산주사보 · 통계주사보 · 공업주사보 · 시설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“57”을 “58”로, 행정서기 · 보건서기 · 간호서기 · 전산서기 · 통계서기 · 공업서기 · 시설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“23”을 “24”로 한다.

별표 6 중 총계 “481”을 “486”으로, 일반직 계 “480”을 “485”로, 행정사무관 · 사회복지사무관 · 보건사무관 · 의료기술사무관 · 약무사무관 · 간호사무관 · 전산사무관 · 통계사무관 · 공업사무관 · 시설사무관 · 방재안전사무관 · 보건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“57”을 “58”로, 행정주사 · 사회복지주사 · 보건주사 · 약무주사 · 간호주사 · 전산주사 · 통계주사 · 공업주사 · 시설주사 · 방재안전주사 · 보건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“56”을 “58”로, 행정주사보 · 사회복지주사보 · 보건주사보 · 약무주사보 · 간호주사

보·전산주사보·통계주사보·공업주사보·시설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“57”을 “58”로, 행정서기·보건서기·간호서기·전산서기·통계서기·공업서기·시설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“23”을 “24”로 한다.

별표 8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“708”을 각각 “706”으로, 행정주사보·사회복지주사보·보건주사보·의료기술주사보·약무주사보·간호주사보·전산주사보·공업주사보·시설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“157”을 “156”으로, 행정서기·사회복지서기·보건서기·의료기술서기·간호서기·전산서기·공업서기·시설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“220”을 “219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정원 대비 표

[별표 5]

질병관리청 공무원 정원표(제27조제1항 본문 관련)

직	급	별	현	행	개정안	증	감
총	계		•		•		
			<u>477</u>		<u>482</u>	+5	
일	반	직	•		•		
계			•		•		
			<u>476</u>		<u>481</u>	+5	
•			•		•		
•			•		•		
행	정	사					
부	서	관					
•							
사	회	보					
지	사	부					
서	관						
•							
보	건	사					
부	서	관					
•							
의	료	기					
술	사	부					
서	관						
•							
약	무	사					
부	서	관					
•							
간	호	사					
부	서	관					
•							
전	산						
사	부	관					
•							
통	계	사					
부	서	관					
•							
공	업	사					
부	서	관					
•							
시	설	사					
부	서	관					
•							
방	재	안					
전	사	부					
관							
•							
보	건	연					
구	관	또					
는							
기	록	연					
구	관						
•							
•							

행정주사 · 사회복지주사 · 보건주사 · 약무주사 · 간호주사 · 전산주사 · 통계주사 · 공업주사 · 시설주사 · 방재안전주사 · 보건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.	<u>56</u> .	<u>58</u> .	+2
행정주사보 · 사회복지주사보 · 보건주사보 · 약무주사보 · 간호주사보 · 전산주사보 · 통계주사보 · 공업주사보 · 시설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	<u>57</u>	<u>58</u>	+1
행정서기 · 보건서기 · 간호서기 · 전산서기 · 통계서기 · 공업서기 · 시설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. .	<u>23</u> . .	<u>24</u> . .	+1

[별표 6]

질병관리청 공무원 정원표(제27조제1항 단서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• <u>481</u>	• <u>486</u>	+5
일반직 계	• • <u>480</u>	• • <u>485</u>	+5
행정사무관 · 사회복지사무관 · 보건사무관 · 의료기술사무관 · 약무사무관 · 간호사무관 · 전산 사무관 · 통계사무관 · 공업사무 관 · 시설사무관 · 방재안전사무 관 · 보건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	• • <u>57</u>	• • <u>58</u>	+1
행정주사 · 사회복지주사 · 보건 주사 · 약무주사 · 간호주사 · 전 산주사 · 통계주사 · 공업주사 · 시설주사 · 방재안전주사 · 보건 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	• • <u>56</u>	• • <u>58</u>	+2

· 행정주사보 · 사회복지주사보 · 보건주사보 · 약무주사보 · 간호 주사보 · 전산주사보 · 통계주사 보 · 공업주사보 · 시설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행정서기 · 보건서기 · 간호서기 · 전산서기 · 통계서기 · 공업서 기 · 시설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· ·	· <u>57</u> <u>23</u> · ·	· <u>58</u> <u>24</u> · ·	+1 +1
---	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[별표 8]

질병대응센터 공무원 정원표(제28조제2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·	·	·	
총계	<u>708</u>	<u>706</u>	-2
일반직 계	<u>708</u>	<u>706</u>	-2
·	·	·	
·	·	·	
행정주사보 · 사회복지주사보 · 보건주사보 · 의료기술주사보 · 약무주사보 · 간호주사보 · 전산 주사보 · 공업주사보 · 시설주사 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	<u>157</u>	<u>156</u>	-1
행정서기 · 사회복지서기 · 보건 서기 · 의료기술서기 · 간호서기 · 전산서기 · 공업서기 · 시설서 기 또는 방재안전서기	<u>220</u>	<u>219</u>	-1
·	·	·	
·	·	·	